안내문: 연방정부의 드라이클리닝 업계 PCE 사용 단계적 중단 계획

NEW YORK STATE OF OPPORTUNITY. | Empire State Development

PCE 드라이클리닝 시설 소유주/운영자 대상 안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12월 18일, 독성물질관리법(TSCA) 개정안에 따라 퍼클로로에틸렌(PCE, 일명 퍼크 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PCE는 신경독성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연구를 통해 특정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건강상 위해성 때문에, EPA는 PCE의 제조 및 사용을 대폭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면 사용 중단을 목표로 이번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PCE는 향후 10년에 걸쳐 드라이클리닝 업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1단계는 2025년에 시작되며, 2025년 6월 16일 이후에 도입되는 신규 장비에서는 PCE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는 PCE를 사용하는 용도의 기계 제조가 금지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EPA가 기계의 연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PCE 장비를 폐기하도록 사업체에 요구할 예정이며, 가장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폐기 대상이 됩니다. 향후 10년에 PCE 드라이클리닝 장비는 오래된 세대부터 시작해서 세대별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뉴욕주에는 약 925개의 드라이클리닝 업소가 있으며, 이 중 약 530곳이 현재 PC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모든 PCE 장비는 4세대 기종이어야 합니다. 4세대 PCE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PCE와 관련 장비를 사업장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미국에서는 2034년 12월 19일을 기점으로 드라이클리닝용 PCE 용제의 구매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PCE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향후 10년간의 전면 퇴출 기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즉시 승인된 대체 용제 또는 다른 세탁 방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전국(DEC)는 PCE를 대체할 수 있는 승인된 용제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뉴욕주 환경보전국(DEC) 웹사이트의 ‘드라이클리닝 대체 용제(Alternative Solvent Dry Cleaning)’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하단 QR 코드 참조).

웨트클리닝(wet cleaning)은 드라이클리닝을 대체할 방법 중 가장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입니다. 대체 용제와 웨트클리닝 방식 모두 신규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 PCE 장비의 폐기가 요구됩니다. PCE 폐기물, 잔해 및 오염된 장비는 모두 유해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PCE 장비 폐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은 DEC 웹페이지의 ‘사용한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 폐기(Disposal of Used Perc Dry-Cleaning Equipment)’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드라이클리닝 사업장의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무료 및 비밀 보장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중소기업 환경 지원 사무소(SBESO, Small Business Environmental Support Office)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877-247-2329/이메일: SBESO@esd.ny.gov.

또한 중소기업 환경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Environmental Assistance Program)에서는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무료 및 기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585) 475-7869/이메일: SBEAP@rit.edu

중소기업 환경 지원 사무소(SBESO) • 1-877-247-2329 • SBESO@esd.ny.gov

본 프로그램은 뉴욕주 경제 개발 기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2025년 7월

여기를 스캔: **DEC 대체 용제 목록**

여기를 스캔: **EPA PCE 규정 준수 가이드**